

「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와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.

2024년 3월 29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이 개정되어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, 고흥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된 지급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의정활동비 지급금액 인상(안 별표1): 월 1,100,000원→ 월 1,500,000원
(의정자료수집·활동비: 월 120만원, 보조활동비: 월 30만원)

3. 개정조례안: 붙임

4. 조례안 예고기간: 2024. 3. 29. ~ 2024. 4. 4.(7일간)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

다. 의견 제출받는 곳

- 1) 우편 : (59542)/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
고흥군의회의회장 (참조 : 의회사무과장)
- 2) 전화 : 061-830-5032, 팩스 : 061-830-5595

- 붙임 1. 고흥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1부.
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의정활동비의 금액란 중 “월 1,100,000원”을 “월 1,500,000원(의정자료수집·연구비 120만원, 보조활동비 30만원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적용례)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

[별표1]

의정활동비 · 월정수당 지급기준표(제6조제1항 관련)

(단위: 원)

구 분	금 액	비 고
의정 활동비	<u>월 1,100,000</u>	1인기준
월정수당	· 2023년: 월 1,668,000 · 2024년~2026년: 전년도 지급기준액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	"

개정안

[별표1]

의정활동비 · 월정수당 지급기준표(제5조제1항 관련)

(단위: 원)

구 분	금 액	비 고
의정 활동비	<u>월 1,500,000원</u> <u>(의정자료수집·연구비 120만원, 보조활동비 30만원)</u>	1인기준
월정수당	· 2023년: 월 1,668,000 · 2024년~2026년: 전년도 지급기준액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	"

[붙임 2]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